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51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이헌승 · 김상훈 · 서지영
김선교 · 박덕흠 · 김승수
성일종 · 이성권 · 유용원
윤상현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9조의2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및 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을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본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반기보고서”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의2”로 한다.

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5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

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 지속가능보고서 · 반기보고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하여 제429조 제3항 및 제444조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 <u>1.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u>

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업
의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
위험 및 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보
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속가능
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준을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
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
항의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
출에 관하여는 제159조제6항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본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
고서, 반기보고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59조, 제159조의2, 제160조 및 제161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

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

제159조제1항, 제159조의2제1항

④ (현행과 같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려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
 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
 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⑥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llegible]

1. 제159조, 제159조의2-----

2. 제159조, 제159조의2-----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 -----.
1. ~ 27. (생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u>사업보고서</u> · <u>반기보고서</u> · <u>분기보고서</u> 나 <u>주요사항보고서</u>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59조의2----- ----- <u>사업보고서</u> · <u>지속가능보고서</u> · <u>반기보고서</u> ----- ----- -----
29. ~ 64. (생략)	29. ~ 64. (현행과 같음)